

초등과정 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밀알두레학교 초등과정 생활규정」이라 한다. 이하 본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초등과정 밀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자녀 됨을 누리며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 초등과정시기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며 바른 인성을 키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우며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활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려고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성경 말씀과 밀알두레학교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한다.

제4조 (밀알의 권리 보장원칙)

①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밀알의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격체로서의 밀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밀알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② 밀알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 (책무)

-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밀알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 ② 학교장, 교직원, 밀알의 보호자 등은 밀알의 인권을 존중하고 밀알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렇게 지도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들은 본 초등과정 생활규정에 의거한다.
- ③ 밀알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④ 밀알은 본 생활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지키도록 한다.

제6조 (교육환경의 개선) 학교장은 밀알과 교직원의 인권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 밀알의 인성 및 생활

제7조 (바른 언어 및 행동)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기에 밀알두레학교는 밀알들에게 언어와 행동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① 인고정바를 실천한다.

- 인: 인사를 잘해요
고: 고운말을 써요
정: 정리정돈을 잘해요
바: 바른자세를 해요

② 이유를 떠나서 친구를 놀리거나 비난, 욕, 신체적 폭력을 행한 경우, 아래의 절차대로 면담을 실시한다.(모든 진행 상황은 학부모에게 전달한다)

- 1회 밀알과 담임 상담 및 지도(담쟁이 대화문을 사용할 수 있다.)
- 2회 담임주도의 회복적 서클
- 3회 생활지도위원회의 회복적 서클
- 4회 학부모와 교감과의 면담(이때 밀알에 대한 구체적 가정생활지도 제안 및 논의를 하며

면담에서 나누어진 내용을 교사 정리하여 학부모의 싸인을 받는다)

- 5회 이상 누적 시 등교정지를 하루 실시하고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등교정지도 하루씩 증가한다.
- 8회이상시 교장, 교감, 교목, 담임과의 면담을 실시한다.

③ 가요를 부르지 않는다.

④ 실내에서 뛰거나 소리 지르지 않으며 공놀이를 하지 않는다.

제8조 (바른 용모) 밀알두레학교 밀알로서 품위와 자세에 맞는 복장을 갖춘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위생 및 청결을 유지한다.

① 화장을 하지 않으며, 컬러 렌즈를 착용하지 않는다.

② 피어싱을 하지 않는다.

③ 자신의 윗옷을 올려 배를 보이거나, 어깨를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않는다.

④ 체육이 있는 날은 운동복을 입고 온다.

제9조 (휴대폰 및 각종 전자기기 사용)

① 학교에서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② 휴대폰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 등교 시에 소지할 경우 학부모의 서약서를 제출한 후 가능하며, 이때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보관했다가 하교 시에 돌려준다. 등하교시에는 부모님에게 전화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다.

③ 학교버스 안에서도 부모님께 연락하는 일을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유튜브, 게임 등)

④ 학교에 전자 기기를 교사의 허락 없이 소지한 경우나 등하교시 임의로 사용한 경우 1주일이내의 범위에서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보관하였다가 밀알에게 되돌려 준다.

제10조 (어린이의 출입금지 구역) 교사나 부모의 동행 없이 노래방과 PC방을 출입하지 않는다.

제11조 (바른 음식)

① 학교는 음식을 골고루 먹도록 권장하고, 밀알은 잔반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에 간식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유기농, 친환경 음식으로 권장하며 반 밀알들 모두가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③ 현장 배움 등 외부 활동 시 도시락은 각자 가정에서 준비해 온다.

제12조 (생일 및 친구 집 방문)

① 가정에서 생일 파티를 할 경우 속해있는 반의 모든 친구를 초대한다.

② 너무 비싸거나 과소비라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생일파티를 하지 않는다. 집에서 생일파티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가정에서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경우도 친환경 음식을 권장한다.

④ 친구 집을 방문할 경우

가. 하루 전에 미리 양쪽 집에 모두 허락을 받고 부모님은 담임 선생님에게 알린다.

나. 친구 집에 방문하는 목적과 돌아오는 시간 등을 부모님께 반드시 말씀 드린다.

다. 친구 집에 놀러 가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학교 버스를 바꿔 타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 차량선생님에게 확인 후 자리에 여유가 있을 경우 타도록 한다.

제13조 (장난감 및 만화책)

① 장난감은 학교에 가져오지 않는다.

② 위험한 장난감(야구배트, 하드볼, 총기류 등)과 교사 협의회에서 정한 교육적이지 않은 장난감(트럼프, 유희왕 카드, 포토 카드, 띠부씰 등)은 가져오지 않는다.

③ 공은 케이스를 가져와서 이동시 넣어서 이동한다.

④ 장난감을 서로 바꾸거나 팔거나 진짜로 주고받지 않는다.

- ⑤ 장난감이 학교생활 및 수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 될 경우 교사가 수거하거나 가져오지 않게 할 수 있다.
- ⑥ 강한 고무재질의 딱지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경쟁적으로 과도하게 구입하여 사행성이 조장되어 가져오지 않는다.
- ⑦ 모든 만화책은 가져오지 않는다.

제14조 (학교 버스 및 등하교 안전지도)

- ① 학교버스를 타고 내릴 때 기사 선생님에게 바른 자세로 인사한다.
- ② 지정된 좌석에 앉고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③ 5분전에 미리 탑승하고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출발한다. 단, 늦을 경우 기사선생님에게 전화한다.
- ④ 가정의 상황으로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미리 기사선생님께 연락을 한다.
- ⑤ 학교버스 안에서 부모님께 연락하는 일을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는다.(유튜브, 게임 등)
- ⑥ 자전거로 등하교시 학교에 서약서를 제출하고 안전보호장구를 갖추고 서약서를 제출한다.
- ⑦ 도보나 자전거로 등하교시 교통규칙을 준수한다.
- ⑧ 왕자궁 마을 안에서는 오른쪽으로 걸어다닌다.

제 15조 (지각, 결과, 결석)

- ① 밀알은 학교가 정한 시간에 등교한다.
- ② 지각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각할 경우 교사가 밀알을 권면하고 반복 될 경우 부모와 상담한다.
- ③ 수업시간에 무단결석할 경우 밀알에게 사유서를 받고 반복 될 경우 부모와 상담한다.
- ④ 전체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할 경우 유급으로 한다. 단 현장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연 30일로 제한한다. 현장체험학습을 할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내고 체험학습 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 ⑤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결석할 경우 5일간은 출석을 인정한다.

제 16조 (수업)

- ① 밀알은 수업 중 교사의 말에 순종하고 수업에 성실하게 임한다.
- ② 수업 방해자 및 불성실 참여자 관리
 - 가. 수업 방해자 및 불성실 참여자의 경우 교사의 재량아래 수업에서 제외하여 교무실로 보낸다.
- ③ 각 반 별로 특별히 신경 써서 지도해야 하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교과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과도 자세하게 공유한다.

제 17조 (부칙)

- ① 이 규정은 2012년 09월 03일 제정하고 2012. 10. 01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23.08.28. 수정하고 시행한다.